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88
------	------

제출일자 : 2025.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5. 2. 1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연차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3일 부여(안 제16조제4항)
- 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안 제16조제5항)
- 다.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6조제6항)
- 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0일 연장하여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일)로 조정(안 별표 5)
- 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 2025. 4. 25. ~ 2025. 5. 15.(20일 이상)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5년”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후단 중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한다.

별표 5의 출산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을 “2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으로 하고, 같은 표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제16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략)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 ⑨ (생략)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비고
-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만을 말한다.

모성보호시간

⑦ ~ ⑨ (현행과 같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25)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비고
-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특별휴가 일수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연락처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7. 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04호, 2024. 7.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4.5.2.>
-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1.3.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5.2.>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제6조(친절과 공정)

-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2021.3.18.>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3.18.>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개정 2021.3.18.>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1.3.18.>

③ 국외의 정무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5.2., 2021.3.18.>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5.2., 2021.3.18.>

제10조(복장과 제복)

-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3.18.>
- ③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3.18.>

제11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7.18.]

[중천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개정 2024.7.18.>

[전문개정 2019.5.9.]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8.>]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
-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3.18.>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단서 신설 2019.5.9., 개정 2021.3.18.>
-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 개정 2019.5.9., 2021.3.18.>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7.18.>]

제15조(병가)

-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5.2., 2021.3.1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7.18.>]

제16조(특별휴가)

-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8.>

-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9.5.9., 2021.3.18., 2023.10.12.>

-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3.18., 2022.12.30.>

-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5.2.,><개정 2021.3.18., 2022.12.30., 2023.10.12.>

-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신설 2019.5.9.>

1.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해당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5.9., 개정 2021.3.18.>

- ⑦ 군 임명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임명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5.9.>

- 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2.12.30.>

-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희롱·성폭력·스트로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4.7.18.>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7.18.>]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개정 2021.3.18.>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7.18.>]

제1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18.>

[제17조에서 이동 <2024.7.18.>]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5. 2. 11.] [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일부개정]

-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2023. 7. 18., 2024. 7. 2., 2025. 2. 1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2024. 7. 2.>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2024. 7. 2.>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2024. 7. 2.>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신설 2020. 10. 20., 2024. 7. 2.>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2024. 7. 2.>
-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5. 2. 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